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8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 등 포함	3

I.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87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

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 등 포함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u><신설></u> 4. (생략) ② (생략)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3의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¹⁾,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인 인구 수의 증가²⁾,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³⁾,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3~5등급)의 시설서비스 이용 확대 등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간(2025~2034년) 연평균 10.2%씩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⁴⁾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 2) 참고로,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명을 기록하였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이와 함께,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하였고 2034년에는 171만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상 중앙치매센터, 치매환자 유병현황, 2024 참조
-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 인정비율은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하였으며,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최근 10년간(2015년~2024년) 연평균 11.3%(2015년 47만명 → 2024년 117만명) 증가하여 동 기간 노인 인구 증가율(연평균 4.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25~2034년>

(단위: 조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수 입(A)	17.8	19.3	20.7	22.2	23.9	25.7	27.7	29.8	31.6	33.2
지 출(B)	17.6	19.3	21.4	23.7	26.1	28.7	31.4	34.3	37.7	40.9
재정수지(A-B)	0.2	0.0	-0.6	-1.4	-2.2	-3.0	-3.7	-4.5	-6.2	-7.7
누적준비금	5.9	5.9	5.4	3.9	1.8	-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 이와 같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수급자 확대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지출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 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⁵⁾

□ 그런데, 현행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⁶⁾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포

5) 박선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요인 및 시사점, 나보포커스 제113호, 국회예산정책처, 2025. 6. 17.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보험료 부과체계를 적정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⁷⁾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강보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보험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참고로,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5개연도의 재정전망(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준비금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출효율화 및 구조개혁 추진, 국고 지원 등 수입확충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등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피부양자 제도 개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보험료를 및 안정적 국고지원 방안) 및 재정 운영·관리체계 개선 관련 사항(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재정지표 공개 확대, 국회보고 절차 강화)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현행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5년 단위의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⁹⁾,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이 선제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요양급여 중장기 재정 전망에 관한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항목으로 별도로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중장기 재정 전망의 대상기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전망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에서는 중장기 재정 전망으로 향후 5년의 재정 전망을 포함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¹⁰⁾에서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기본법」¹¹⁾에 따른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¹²⁾에서는 40년 이상의 기간(2024년~2065년)을 대상으로 재정추계하고 있고 「국가재정법」¹³⁾에서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

9) 다만,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수립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 강화’ 항목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법정 국고지원 확보 및 추가 재원 발굴 검토, 장기요양 수입·지출 예측 시스템 고도화 및 추계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계획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그 밖에 자산·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1)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2) 보건복지부, 제5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24. 11.

13)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으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중장기 계획·
전망별로 대상기간에 차이가 있는바,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재정 전망 대상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정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법 제9조14)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산정한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료율(7.09%)¹⁵⁾ 대비 장기요양보험료
율(0.9182%)¹⁶⁾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현행법 제11조17)에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대상, 부과기
준, 세부 산정방식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보건복지부
및 공단의 의견이 있는데,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5)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각각 1만분의 709로 한다.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182로 한다.

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제109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9조제3항¹⁸⁾에서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과 부과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점,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경우 건강보험 부과체계와는 별도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므로¹⁹⁾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의 경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어 보이는 점²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셋째,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이 국가 재정 외로 운용되어 현재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예·결산 및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²¹⁾에서는 국민건강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0) 참고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항목에서 적정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을 서술하고 있음.

21)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보험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할 경우 장기요양기본계획 또는 중장기 재정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넷째, 안 부칙에서는 개정안의 시행일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할 경우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 시행 이후 수립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²²⁾

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5.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의2.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결은 제외한다)

가. 건강보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 파악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나. 가입자의 소득 파악 및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참고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의 경우 2023년 8월 발표되었으며, 2023년부터 2027년 간 5개연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견

-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을 포함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함.
- 다만,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장기요양기본계획 내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필요성은 높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503